

정관

BGF리테일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제2조(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제4조(공고방법)

제2장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6조(1주의 금액)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제8조(주식의 종류)

제9조(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제10조(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1조(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2조(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3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4조(신주의 발행 및 배정)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장 사채

제18조(사채의 발행)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1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4장 주주총회

- 제23조(소집시기)
- 제24조(소집권자)
-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 제26조(소집지)
- 제27조(의장)
- 제28조(결의방법)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5장 이사, 이사회

- 제31조(이사의 수)
- 제32조(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 제33조(이사의 임기)
- 제34조(이사의 직무)
- 제35조(이사의 의무)
- 제3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 제40조(위원회)
-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6장 감사위원회

- 제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7장 계산

제44조(사업연도)

제4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제47조(이익의 배당)

제48조(중간배당)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BGF Retail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식품, 생활용품 및 각종 물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종합 도소매업
2. 국내외 편의점 개발 및 연쇄화 사업 일체
3.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4. 일반제품 및 상품유통업
5. 백화점 경영
6. 음식점업
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개발업
9. 정보제공 및 부가서비스업
10.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일체
11.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사업
12. 광고업
13. 자판기 운영업, 임대업, 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14. 전자 전기제품 판매업
15.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 도소매업
16. 첨단기술 및 매체 활용사업
17.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8.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19. 별정통신사업
20. 태양력 발전업
21.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업
2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2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24.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 27. 상품 중개업
- 28.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gfretai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천만 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7,283,906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제9조 내지 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더 높은 범위 내로 한다.

④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에 관한 주식이나 상환에 관한 주식과 혼합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보

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주”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우선주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배당우선주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에 참가시키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제10조(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2. 자본금의 감소
3. 「정관」의 변경
4. 재무제표 등의 승인(이익배당 포함)
5. 이사보수한도 승인
6.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권 변동, 소유구조 내지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배당우선주와 혼합하여 발행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회사상환주식”이라 한다)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하 “주주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5%의 가산금액을 더한 가액을 한도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상환주식의 경우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 ④ 회사는 회사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고, 분할 상환하는 경우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는 주주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 청구의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⑦ 회사는 회사상환주식 또는 주주상환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회사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 및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는 주주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직전 1년 동안의 보통주식의 종가 산술평균이 회사전환주식의 종가 산술평

균을 1.5배 이상 상회하는 경우

2. 직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회사전환주식의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유동주식수는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3. 특정인(회사의 최대주주를 제외한다)이 단독 또는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회사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특정인(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를 제외한다)이 회사 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제3호 및 제4호의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신주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기업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회사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8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

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2천억원 범위 내에서 배당우선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다만, 공모발행에 의하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2천억원 범위 내에서 배당우선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다만, 공모발행에 의하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

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고, 총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총회는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다수이거나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이 회사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상황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31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이사의 선임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차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의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다수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진행 상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0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총액한도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관련 법령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장 계산

제44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에 규정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위 각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에 규정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상법」 제447조의2에 규정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에 규정된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7조(이익의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배당금을 주주총회 승인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쓸 수 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가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 당해 신주는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2017. 9. 2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당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5조에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28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통해 선임한다.

제5조(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정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설립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7년 9월 28일 기명날인한다.

부칙(2019. 3. 27 개정)

이 「정관」은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정관」 제1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며, 구 「정관」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

구 「정관」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5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21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2020. 3. 25 개정)

이 「정관」은 제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